

규약 개정 (안)

순번	항목	현행	개정안	비고
1	규약 제3장 조직 제14조[각급 대회일정]	각급 조직의 대회일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단, 천재·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.	각급 조직의 대회일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	단서조항 삭제
2	규약 제3장 조직 제14조 2[불가항력 등]	<신설>	천재지변 또는 법원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정된 일자에 전국대의원대회가 치러지지 못하여 대회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본 규약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적절히 판단하여 전국대의원대회의 실시방법, 시기 및 공고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불가항력 신설
3	규약 제4장 회의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24조[선출]	② 전국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선출한다. ③ 전국대의원 선출인원은 지부단위로 1명씩 선출한다.	② 전국대의원 선출인원은 <u>지부별 조합원이 200인 이하일 경우에는 지부별로 1명씩 선출하고, 지부별 조합원이 200인 초과일 경우에는 20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되 단수 101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선출한다.</u>	2항 삭제 선출기준 변경 (3항→2항 변경)
4	부칙		부칙(2017.04.17) 제1조(시행일)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준용)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	